

의안번호	
의 퇴 인	전진숙 의원
회 답 일	2025. 5. 14.
추 계 번호	25C259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15억 4,100만원(연평균 63억 8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노인 주치의 제도(안 제27조의5)	5,613	5,951	6,327	6,645	7,004	31,541	6,308

주: 본 추계결과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분에 상응하는 국고지원금(국고지원을 14% 적용)과 의료급여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합산한 결과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6] 및 [표 7]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7조의5 (노인 주치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7조의5 (노인 주치의)	○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행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와 동일한 체계로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이 건강·치과 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치과의사를 선택하여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구강관리 등 포괄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는 사업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소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장애인 본인이 10%를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100%를 부담하고 있음
 - 노인의 주치의 서비스 이용 특성이 장애인의 현행 서비스 이용 특성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 － 현행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검진 등에 따라 수가가 각각 산정되어 있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이용 내역 및 소요 비용이 달라지므로, 향후 노인의 서비스 이용 특성에 따라 소요 재정이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 시 건강보험 지출(국민건강보험 적용자 대상) 및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지출(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재정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해당하지 않으나,¹⁾

1)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함.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자체는 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국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²⁾³⁾ 동 금액을 추계의 대상에 포함함

- 추계의 대상은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건강보험지원 금액)이나, 이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지출 증가액이 산출되어야 하므로 해당 추계결과를 함께 제시

□ 현행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일반 건강 주치의 제도와 치과 주치의 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본 추계서 역시 주치의 제도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일반 건강 주치의 제도는 2018년부터, 치과 주치의 제도는 2020년부터 각각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두 제도 모두 2018~2023년까지는 중증장애인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4년부터 경증장애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함

□ (참여자 수) 건강보험 적용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나누어 추계하되, 2024년 기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참여율을 적용

- (장애인이 아닌 65세 이상 의료보장 인구 산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상의 65세 이상 인구에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비장애인 의료보장 유형별 비중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의료보장 유형별 65세 이상 인구를 산출하고, 다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 인구 중 비장애인의 비율을 적용

[표 2] 2024년 65세 이상 의료보장 인구 현황

(단위: 명, %)

구 분	65세 이상 의료보장 인구 (A)		장애인	비장애인(B)	B/A
		비율			
합 계	10,539,530	100.0	1,450,285	9,089,245	86.2
건강보험	9,709,366	92.1	1,211,003	8,498,363	87.5
차상위	139,717	1.3	37,610	102,107	73.1
의료급여	690,447	6.6	201,672	488,775	70.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건강보험 수입 증가가 수반되는 것으로 가정
- 3)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참여자 수 산출) 장애인이 아닌 65세 이상 의료보장 인구에 의료보장 유형별 참여율을 적용
 - － 일반 주치의 제도 참여자와 치과 주치의 제도 참여자로 구분하여 산출

[표 3] 2024년 장애인 주치의 제도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장애인 의료보장 인구(A)	일반 주치의 제도		치과 주치의	
		참여자(B)	참여율(B/A)	제도 참여자(C)	참여율(C/A)
건강보험	1,968,724	2,311	0.12	1,148	0.06
차상위	52,026	230	0.44	56	0.11
의료급여	460,337	2,998	0.65	786	0.17

주: 1. 중증과 경증을 합산한 수치

2. 2024년에 주치의 제도에 대한 급여비가 지출된 사람 수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노인 주치의 제도 참여자 수 추계) 노인 일반 주치의 제도 참여자 수는 2026년 1만 4,366명에서 2030년 1만 6,762명 수준으로, 노인 치과 주치의 제도 참여자 수는 2026년 6,228명에서 2030년 7,266명 수준으로 추계
 - －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참여율을 적용한 것으로 실제 제도 시행 시 참여자 수가 달라질 수 있음

[표 4] 노인 주치의 제도 참여자 수 추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65세 이상 인구(천명)	11,125	11,597	12,125	12,521	12,980
비장애인(천명)	9,594	10,001	10,457	10,798	11,194
건강보험	8,970	9,351	9,777	10,096	10,466
차상위	108	112	117	121	126
의료급여	516	538	562	581	602
비장애인 중 일반 주치의 제도참여자(명)	14,366	14,977	15,658	16,170	16,762
건강보험	10,530	10,977	11,477	11,852	12,286
차상위	476	497	519	536	556
의료급여	3,360	3,503	3,662	3,782	3,920
비장애인 중 치과 주치의 제도참여자(명)	6,228	6,492	6,787	7,009	7,266
건강보험	5,231	5,453	5,701	5,887	6,103
차상위	116	121	126	131	135
의료급여	881	918	960	991	1,028

주: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참여율을 적용한 것으로 실제 제도 시행 시 참여자 수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 단가) 2024년의 참여자 1인당 급여비용을 바탕으로 최근 5년 (2021~2025년) 연평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추계
- 2021~2025년 의원 의료수가 평균 인상률: 1.65%
 - 2021~2025년 치과 의료수가 평균 인상률: 2.43%

[표 5] 2024년 장애인 주치의 제도 보험급여비 현황

(단위: 명, 천원)

구 분	일반 주치의 제도			치과 주치의 제도			비 고
	참여자 수	보험급여비	1인당 단가	참여자 수	보험급여비	1인당 단가	
건강보험	2,311	1,590,896	688	1,148	213,260	186	공단부담금
차상위	230	204,087	887	56	12,969	232	공단부담금
의료급여	2,998	3,596,156	1,200	786	164,026	209	국고

주: 1. 중증과 경증을 합산한 수치

2. 2024년에 주치의 제도에 대한 급여비가 지출된 사람 수 기준으로 작성

3. 건강보험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10%)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기준으로 작성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건강보험 적용자에 대한 추가재정소요) 건강보험 지출 증가액에 최근 3년간(2022~2024년 결산) 연평균 국고지원율(14%)을 적용하여 산출

[표 6] 건강보험 적용자에 대한 노인 주치의 제도 추가재정소요 추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일반	건강보험	7,490	7,936	8,434	8,853	9,328
	차상위	436	463	492	516	544
치과	건강보험	1,020	1,089	1,166	1,233	1,309
	차상위	28	30	32	34	36
건강보험 지출 증가액 합 계(A)		8,974	9,518	10,124	10,636	11,218
국고 추가재정소요 (A*14%)		1,256	1,332	1,417	1,489	1,5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추가재정소요) 의료급여 수급 참여자 수에 1인당 비용단가를 곱하여 산출
- 의료급여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이므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표 7]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노인 주치의 제도 추가재정소요 추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일반 주치의 제도	4,164	4,413	4,689	4,923	5,186
치과 주치의 제도	193	206	221	233	248
합 계	4,357	4,619	4,910	5,156	5,4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15억 4,100만원(연평균 63억 8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8]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5,613	5,951	6,327	6,645	7,004	31,541	6,3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